자격유형 특정

공고를 몇 개 보았으나... 사실 공고로 알기는 힘들었다.

실제 LH에서 설명하는 식도 공급유형 -> 입주자격 이런 식이기 때문에

공급유형별로 입주자격을 보는 식으로 특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. (주의점: test에 B,F,O없음)

전에 correlation plot에서 보았듯이 임대상가와 D는 correlation이 0.98로 둘중 하나를 드랍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, D가 상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.

임대아파트는 5가지 종류(국민, 공공, 영구, 장기, 행복)가 있다.

- 영구임대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[소득 1분위]
- 국민임대: 무주택세대구성원[소득 2~4분위]
- 장기전세: 무주택세대구성원[소득 3~4분위]
- 공공임대(5년/10년/분납): 무주택세대구성원[소득 3~5분위]
- 행복주택: 무주택세대구성원/무주택자[소득 2~5분위]

국민임대

```
국민임대 ['A' 'B' 'E' 'G' 'H']
```

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
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이란 소득 1~4분위 계층을 뜻 합니다.

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을 하며 공급하는 주택입니다.

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이며 장기간(30년) 동안 임대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.

• 국민임대 입주조건:

■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

	구분			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
	소득	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	월평균소득기준 3,781,270원이하 4,315,641원이하 4,689,906원이하 5,144,224원이하 5,598,542원이하 6,052,860원이하	참고사항 *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(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) *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
자산	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	•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,000만원 이하 •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,499만원 이하		

- 소득기준: 소득은 **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**가 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자산기준: 총자산 292000만원 이하,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 (현재 기준) 여기서 말하는 총자산은 토지, 건물, 자동차, 금융자산, 일반자산 등을 뜻합니다. 자동차 자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뜻합니다.
- 임대료: 시중시세의 60~80퍼센트

*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(1인가구 90%, 2인가구 80%)이하인 사람 * 단독세대주는 40㎡ 이하만 신청가능 - 중증장애인 50㎡미만까지 가능 *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

전용면적 50㎡미만

가구원수	50%	70%
3인 가구	3,120,260	4,368,364
4인 가구	3,547,103	4,965,944

①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

-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기구당 소득의 50%(1인기구 70%, 2인기구 60%)이 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
- (1순위) 당해주택 건설 시·군·구 거주자
- (2순위)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·군·구 중
 사업주체 지정 시·군·구 거주자
- (3순위) 1.2순위 이외의 자
- *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(태아포함) 3명 이상인자,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

전용면적 50㎡이상~60㎡이하

-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(1인가구 90%, 2인가구 80%)이하인 사람
- * 단독세대주는 40m² 이하만 신청가능 중증장애인 50m²미만까지 가능
- *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

[단위 : 원]

기구원수	50%	70%
3인 가구	3,120,260	4,368,364
4인 가구	3,547,103	4,965,944

①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

- " (1순위)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
- " (2순위)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
- " (3순위) 제 1.2순위 이외의 자
- * 동일순위내 경쟁시 미성년자녀(태아포함) 3명 이상인자, 당해지역 거주자,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

신혼부부·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

- 신혼부부(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
- 예비신혼부부(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)
-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

" (1순위

1) 혼인기간 중 출산(임신·입양 포함)하여 자녀(미성년자로 한정하며, 태아를 포함)가 있는 신혼부부,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

2)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(미성년자 한정)가 있는 경 우

- (2순위)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전용면적 나눠서 봤지만 특정하기는 힘들었다... 왜 햄복할수 없어!!!

공공임대(5년, 10년, 50년)

공공임대(50년) ['A'] 공공임대(10년) ['A']

공공임대(5년) ['A'] # test에는 공공임대 5년은 없다.

공공임대(분납) ['A']

공공임대주택은 **5년 또는 10년** 동안 임대를 살다가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줍니다.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임대주택이 마음에 든다면 **입주자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.**

하지만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만 가능하고,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.

- 임대료: 시세대비 60~90% or 시중시세 이하
- 공공임대 입주조건: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**면적**에 따라 다릅니다. 각 면적별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자산보유 기준만 만족하시면 됩니다. 자산보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입주자격: 모집공고일 당시에 임대아파트가 건설될 지역에 **거주하고 있는자**, 무주택세대 구성원, **주택청약종합저축**(입주자저축 및 청약저축 포함)에 가입한 자일 경우 신청 가 능합니다.
-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입주자격: 만 19세 이상, 주택청약종합저축(입주자저축 및 청약저축 포함)에 가입한 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
- 자산보유기준:
 - 부동산(토지, 건물) **215,500,000원**
 - 자동차 **27,640,000원**

공공임대는 다 A만 나와서...

A는 모집공고일 당시에 임대아파트가 건설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&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맞는 것 같다.

영구임대

• https://www.lh.or.kr/contents/cont.do

영구임대 ['A' 'C' 'E' 'F' 'I']

영구 임대주택은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으로,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에 만들어졌습니다.

• 임대료: 시세대비 30% 수준

전용면적 **26.34제곱미터에서 42.68제곱미터 규모의 주택**이 19만여호 건설됐고, 건설된 주택은 **기초생활수급자**와 같은 **저소득층**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됐습니다.

입주자격은 간단하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용가능한 주택입니다.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ひ 공급대상

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

입주자격	근거규정
① 생계의료급여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
② 유공자 또는 그 유족 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(1인가구 90%, 2인가구 80%) 이하	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 유공자
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	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
②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	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
③ 북한이탈주민 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(1인가구 90%, 2인가구 80%) 이하	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(1인가구 90%, 2인가구 80%) 이하	장애인 복지법
⑦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-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	
③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(1인가구 90%, 2인가구 80%) 이하	아동복지법
③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기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(1인기구 70%, 2인기구 60%) 이하	
⑩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도시자가 인정한 자	①~②의 규정에 준하는 자
①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(1인가구 120%, 2인가구 110%) 이하	장애인복지법

- 기초생활수급자
-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
-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
- 한부모가족
- 북한이탈주민
- 장애인등록자
-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(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함)
- 아동복지시설 퇴소자
-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자 (A보다 기준 빡쎔)

장기전세

장기 전세주택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 등에서 **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** 매입하는 주택입니다. 전세계약은 **20년 범위 내**에서 이루워지는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
입주를 하시려면 소득조건과 자산조건을 만족해야지 입주가 가능합니다.

• 장기전세 아파트 입주조건은 본인과 세대원 **모두 무주택자**이며 **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**에 해당되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
장기전세도 A만 있는 것을 보니 A는 무주택자/소득기준 70% 해당이 맞는 듯.

행복주택

행복주택 ['J' 'K' 'L' 'M' 'N' 'O']

청년(19세~39세·신혼부부·대학생 등 젊은계층)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.

- 임대료: 시중시세의 60~80퍼센트
- 입주조건: 무주택요건 및 소득·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, 산단근로자 등
 - ㅇ 소득기준: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%이하인 자
 - ㅇ 자산기준: 보유 부동산(건물+토지),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
 - (총자산) 29200만원이하(2021년도 기준)
 - (자동차) 3,496만원이하(2021년도 기준)
 - 거주기간: 대학생·청년(6년), 신혼부부(6~10년), 주거급여수급자·고령자(20년)

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, 주거급여수급자, 고령자 등으로 mapping될듯 하다.

참고: LH 사이트 및 블로그

- https://insurance-all.co.kr/%EC%9E%84%EB%8C%80%EC%95%84%ED%8C%8C%ED%8A%B8-%EC%9E%85%EC%A3%BC%EC%A1%B0%EA%B1%B4/
- LH청약센터
- LH 토지주택공사: <u>https://www.lh.or.kr/contents/cont.do?sCode=user&mPid=231&mId=232&menuYear=</u>